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. 6. 14 선고 2016가단2088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,지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6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대 281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1동 중 일부 47㎡, 같은 도면 표시 17, 20, 21, 22, 23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산 부분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동 18㎡의 건물을 각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58, 59, 60, 61, 62, 63, 16, 20, 21, 57, ㄲ², 58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지 168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들은 원고에게,
가. 각 319,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3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나. 각 93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. 4. 13.부터, 피고 C는 2016. 4. 24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다. 2016. 1. 1.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각 연 187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성원제

별지